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4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이헌승·송석준·박덕흠

윤상현 · 김선교 · 서지영

김예지 • 박준태 • 백종헌

서일준 · 김도읍 · 김 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율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 에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반환된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

써 이용자의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종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 절차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사실,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 방식 및 출금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가상자산을 보관 중인 이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이용자에게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조치하여야 한다.
 -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거래기록 등 이용자 관련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영업종료에 따른 이용 자 자산의 보호) ①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종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용자 보호 절차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일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사실,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 방식 및 출금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가상자산을 보 관 중인 이용자에게는 개별적 으로 알려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따른 조치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가상자 산거래기록 등 이용자 관련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전하여 야 한다.